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 안 번 호	13230

제안연월일 : 2025. 9.
제 안 자 : 문화체육관광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건 명	의안번호	발의·제출자	발의제출일	심사경과	
도서관법 일부개정 법률안	2205784	강득구의원 등 10인	’24.11.22.	상정	제420회 국회(임시회)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(’25.1.10.)
				소위 심사	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(’25.9.16.)
	2206799	이학영의원 등 10인	’24.12.20.	상정	제422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(’25.2.19.)
				소위 심사	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(’25.9.16.)
	2209368	김병기의원 등 10인	’25.3.26.	상정	제428회 국회(임시회)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(’25.8.21.)
				소위 심사	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(’25.9.16.)
	2209502	이헌승의원 등 14인	’25.4.1.	상정	제428회 국회(임시회)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(’25.8.21.)
				소위 심사	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(’25.9.16.)

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(2025.9.18.)는 위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

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사회보호법」 폐지 및 「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보호감호소를 삭제하고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용어를 변경함(안 제4조).

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위원장 및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함(안 제12조제8항 신설).

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신청 주체에서 ‘개인’을 삭제하고 ‘출판업체’를 추가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함(안 제23조제1항).

광역대표도서관을 시·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함(안 제25조제1항).

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설립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해당 도서관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강화에 기여함(안 제41조제4항 신설).

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위탁 대상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삭제하고,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업무 일부를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하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함(안 제51조).

3. 부대의견

법률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의 시·도 직접 운영을 의무화할 경우,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가능성이 원칙적으로 배제되어 자치권 보장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음.

법률 제 호
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5호다목 중 “보호감호소·치료감호소”를 “국립법무병원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제6항 또는 제7항의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 및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.

제23조제1항 중 “개인 및”을 “출판업체 또는”으로 한다.

제25조제1항 중 “운영하여야”를 “직접 운영하여야”로 한다.

제4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1조(권한의 위임ㆍ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, 시ㆍ도교육감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

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제2항제5호다목 및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제3조(광역대표도서관 운영에 관한 적용례)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운영 중인 광역대표도서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도서관의 구분) ① (생 략)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 1. ~ 4. (생 략) 5. 특수도서관: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, 다음 각 목의 도서관을 말한다. 가.·나. (생 략) 다. 교도소·<u>보호감호소·치료감호소</u> 등에 수용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정시설도서관	제4조(도서관의 구분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----------. 가.·나. (현행과 같음) 다. -------<u>국립법무병원</u>----------
제12조(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) ① ~ ⑦ (생 략) <u><신 설></u> <u>⑧</u> (생 략)	제12조(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 <u>⑧ 제6항 또는 제7항의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 및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.</u> <u>⑨</u> (현행 제8항과 같음)
제23조(국제표준자료번호) ① 도	제23조(국제표준자료번호) ① ---

서 또는 연속간행물(온라인으로 발행 또는 제작되는 도서 및 연속간행물을 포함한다)을 발행 또는 제작하고자 하는 공공기관, 개인 및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(이하 "자료번호"라 한다)를 부여받아야 한다.	----------출판업체 또는----------.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제25조(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등) ① 시·도는 관할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	제25조(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등) ① ----------직접 운영하여야 -----.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제41조(전문도서관·특수도서관의 설치 등) ① ~ ③ (생 략)	제41조(전문도서관·특수도서관의 설치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④ 제1항에 따른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설립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

	으로 정한다.
제51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 및 시·도교육감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 및 시·도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	제51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, 시·도교육감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②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